

춘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346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B는 2016. 5. 9. E 주식회사와 대출금 3,000만 원,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아래와 같이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F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703312호로 양수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7. 5. 24. 배우자였던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21. 2. 25. 기준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23,837,206원 및 이자 18,861,749원 합계 42,698,955원이다.

E 주식회사는 2019. 2. 26.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F는 2020. 12. 10. A 주식회사에 순차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B는 2021. 5. 6.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C은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인 대상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 B는 앞서 본 대출원리금 채무를 무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시로 봄이 타당하여, 부인권 행사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인 대상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액 산정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0,400,000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 후인 2018. 4. 4.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부인권 행사 당시인 2022. 6. 24.경 그 가액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6.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84,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은 80,365,545원, 17,122,6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84,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97,488,224원(= 80,365,545원 + 17,122,679원)을 공제한 나머지 86,511,776원(= 184,000,000원 - 97,488,224원)을 가액배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 가액배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가액배상액 중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석

1)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와 피고는 2020. 10. 5. 협의이혼하였다.